■ 해외기업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P11> 나.항목별 시 공 범 위 등	- 시티타워 건설비용 257,734,000,000원 산정의 기준이 된 내역서 제공 요청 - 시티타워 건설의 재료/물량 등 검토 시 필요	o 시티타워 건설비용 내역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P11> 나.항목별 시공범위 등	- `구분>설계>시티타워 기본설계 내용준수' 부분에서 시티타워 기본설계 내용인 invisible시스템이 꼭 포함되어야하는지? - 내용준수 시 적용위치, 적용면적 관련된 기준자료 요청	o Invisible 시스템은 미디어 파사드의 부속기능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적용위치 및 면적은 제공한 기본설계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28> 3.외국인 투자기업	- 공모지침서 9조 내용에 사업자 선정 후 30일이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으나 32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 시 외국인투자기업을 평가에 포함되어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점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 외국인투자기업 구성시점 및 평가항목 p16 `9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 사업후보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을 수행할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야한다. p28. `32조 평가분야 등' 외국인투자기업	o 32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신청시 사업신청자의 컨소시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을 말하며, 9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신청자는 사업후보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야합니다.
P28 평가분야	- 주관시공사가 해외건설사일 경우 평가기준은? - 공모지침서 p28 `주관 시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시공능력평가」토건부분 순위' (배점 40)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건설사가 소재국에서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등급을 득하여 이를 제출하는 경우, 경제청은 해당 신용평가등급을 평가기준으로 대체하여 판단할 계획입니다. o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와 유사하게 시공능력평가 토건 부분 순위를 갈음할 수 있는 자료가 해외 건설사 소재국에 존재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경제청은 해당 순위를 평가 기준으로 대체하여 판단할 계획입니다.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P27-28 평가분야 등	- 사업계획서 (시티타워/복합시설/외국인투자 기업) 평가시 평가항목 중 가중치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는지? - 평가항목별 배점 가감 시 모두 동일한 점수로 가감 되는 것인지?	o 평가방법 등은 비공개입니다.

■ 국내기업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제35조 사업후보자 선정방법 P19	- 단독으로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의 평가에 따라 사업후보자로 선정 가능합니까? - 단독으로 사업 신청시 재입찰로 공고되었는데, 그 재입찰의 시기는?	o 제35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o 재입찰 시기는 미확정이며, 재입찰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사업신청자의 재입찰 참여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할 계획입니다. o 재입찰시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제27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등 P25	- 단독 사업 신청시 사업신청서류 반환 여부? - 단독 사업 신청시 사업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경제청이 사업신청자에게 보상하는 여부와 보상금액은?	o 제2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경제청이 제출 받은 사업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후보자가 단독인 경우에도 제출서류 및 제반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o 사업신청서류는 보안이 유지될 것입니다.
제3조 사업내용 P7	- 시티타워 부지와 복합시설 부지를 사업자와 경제청간 구분소유하되, 대외적으로는 각 부지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신청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복합시설 부지에 대해 담보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o 담보권 설정 가부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용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체결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을 허용하더라도 본 사업 목적 한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제13조 임대 및 매각방식 P19	- 복합시설부지에 대해 전매 방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복합시설 부지에 대해 부분 전매는 가능합니까? 전매 방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o 제13조 제6항에서 복합시설부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에는 전매의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 가부, 전매 방지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용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체결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제14조 시 설 타 워 시 설 관 리· 운영 P19	- 시티타워 시설관리의 세부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을 사업신청자에게 제시하여 줄 수는 없습니까?	o 제시하여 줄 수 없으며, 사업자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티타워 시설 전체를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제3조 사업내용 P4	- '시티타워는 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경제청이 소유권을 가지며, 경제청은 사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시티타워의 대부를 허가한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티타워의 대부 여부를 제안 할 수 있습니까?	o 제안 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작 성 지 침 제6조 P43	- 기본설계 준수사항 건축분야 중, 5) 중・고층 전망대, 스카이가든 및 스카이워크의 레벨 및 천장고 (제공도서 높이 이상) 6) 외피 오픈율 증가 불가 7) 비거실 구간과 거실구간의 외피(유리)의 시각적 동질성 확보 (색상 등) 상기의 항목을 사업자의 시티타워 관리,운영의 사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까?	o 중·고층 전망대와 스카이 가든 및 스카이 워크의 천장고는 당초 제공도서 높이이상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전망대의 레벨은 당초 설계도서 기준 이상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외부는 크리스탈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설계되어 당초 설계취지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외피 오픈율 증가 불가 및 외피의 시각적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 성 지 침 제6조 P43	- 기본설계 준수사항 건축구조분야 12)항목 (크리스탈 형상(비정형 다각형)의 외관이 유지되도록 다이아그리드(외피면) 및 Mega Brace(내부)의 구조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내부 공간의 제한이 많은 Mega Brace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까?	o 대각가새를 활용하는 외주부 다이아그리드(DiaGrid) 와 메가 브레이스 구조계획 개념은 유지하여야 하며, 부재의 크기와 위치는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비거실부를 거실부로 변경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메가브레이스 구조는 자유롭게 변경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

■ 국내기업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2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p. 5, 41, 43	▷ 제3조(사업내용 중 기본설계 준수관련)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6조에 따라 시티타워를 신축하되 시티타워 건축물의 기능/구조/설비용량/기타 법률적 제한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용도를 변경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43페이지 상에서는 층수, 층별면적, 전망대 등의 레벨, 천장고, 외피 오픈율 등을 준수하게 되어 있어 변경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1) 만일 내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내부 용도변경에 따른 외부 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존 설계에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o 시티타워의 외부 디자인 개념인 크리스탈 개념(비정형 다각형)과 다이어그리드 구조계획 등 기본설계 준수사항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내부 변경에 따른 외부 계획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o 기존 구조설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구조계획은 제안이 가능하나, 대각가새를 활용하는 외주부 다이아그리드(DiaGrid) 와 메가 브레이스 구조계획 개념은 유지하여야 하며, 부재의 크기와 위치는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비거실부를 거실부로 변경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메가브레이스 구조는 자유롭게 변경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
p. 43	▷ 제6조(시티타워 기본설계) 1. 시티타워 기본설계 준수내용 **공모지침서 p39에 수록된 "도판의 종류 및 내용"과 같이** **①보행/차량 동선 계획,** **②유치용도 및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축물 간 연계** **③개발구상 및 주변과의 연계** **④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모지침서 p43~44 기본설계 준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제안자가 배치/평면/단면/입면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지요?**	o 기본설계 준수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사업제안자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p. 43	▷ 제6조(시티타워 기본설계) 1. 시티타워 기본설계 준수내용 1) 청라의 이미지 구현을 위한 크리스탈 개념(비정형 다각형) **“크리스탈 개념(비정형 다각형)” 준수의 의미에 대해 질의합니다.** **① 기본설계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형태 변경 불가** **② 비정형 다각형의 크리스탈 개념은 유지하고 디자인을 일부 변경가능 위에서와 같이 타워부 외관 디자인 변경 가능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티타워 기본설계 개선을 위하여 크리스탈과 비정형 다각형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다각형의 디자인(구조 및 유리 형태) 변경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기본설계 준수사항(비정형 다각형, 다이아 그리드, 메가브레이스, 오픈율 증가 불가 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외관디자인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o 야간경관설계시 대각가새를 활용한 다이어그리드 구조와 외부유리형태가 어우러진 계획이므로 크리스탈개념의 디자인(구조 및 유리형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p. 43	2) 크리스탈 이미지의 구현을 위한 외부마감재(유리) **① “외부마감재(유리)” 준수라 함은 기본설계와 같이 외벽 주재료인 유리를 다른 재료(ex, AL패널 등)로 변경은 불가능하나 에너지, 경관성을 고려한 유리의 세부사양은 기본설계안과 다른 사양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유리의 반사율 성능기준이 내부 15% 이하/외부 30% 내외의 경우, 비주거부분의 일사는 유리를 투과하여 내부 Catwalk 등이 반대편 유리면에 노출되는 등 외피(유리)의 시각적 동질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사율의 조정 가능여부 및 시각적 동질성의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외부마감재인 유리는 다른 재질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o 비거실부와 거실부의 유리의 색상, 에너지, 광학적 성능등은 구조안정성 확보, 시각적 동질성 유지 및 외부 빛반사 최소화, 야간전망시 내부 빛반사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안이 가능합니다.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p. 43	6) 외피 오픈율 증가 불가 **① 기본설계안에 대한 풍동실험 데이터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합리적인 건축 및 구조 설계를 위해 타탕한 경우 외피 오픈율을 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o 풍동실험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으며, 외피 오픈율 증가는 불가합니다.
p. 43	7) 비거실 구간과 거실구간의 외피(유리)의 시각적 동질성 확보(색상 등) **본 문항은 기본설계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안에서 비거실 및 거실구간의 유리 사양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지침서의 의도는 타워부 전체에 대한 색상 등에 대한 동질성 확보로 일체화된 이미지 구현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사업제안자가 외벽 유리의 사양은 기본설계안을 준수하고 색상 등에 대한 동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타워부의 전체 색상 등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하여 일체화된 이미지를 구현하기위한 사항입니다.
p. 43	12) 크리스탈 형상(비정형 다각형)의 외관이 유지되도록 다이아그리드 (외피면) 및 Mega Barce(내주)의 구조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물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풍하중 변위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검토하였을 때, 기본설계의 구조형식이 불합리 할 경우 사업제안자가 크리스탈 형상의 외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구조안전성,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구조 형식을 변경 제안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 경사부재의 설계는 강구조 설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① "경사부재"라 함은 다이아그리드, 메가브레이스와 같은 사선형태의 구조부재를 의미하는지요.** **② 사업제안자가 기본설계안의 구조형식을 검토하여 구조안전성,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해 경사부재의 구조형식에 대한 변경 제안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경사부재는 다이아그리드와 메가브레이스로 구조 형식 변경에 대해서는 시티타워의 외부 디자인 개념인 크리스탈 개념(비정형 다각형)과 다이어그리드 구조계획 등 기본설계 준수사항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내부 변경에 따른 외부 계획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o 기존 구조설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구조계획은 제안이 가능하나, 대각가새를 활용하는 외주부 다이아그리드(DiaGrid) 와 메가브레이스 구조계획 개념은 유지하여야 하며, 부재의 크기와 위치는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비거실부를 거실부로 변경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메가브레이스 구조는 자유롭게 변경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p. 13	▷ 제4조(사업일반조건) ⑦ 총 사업비에는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괄입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허가 관련 비용 및 설계 및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금만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티타워의 경우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제세공과금과 각종 부담금에 대한 제외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지방세법 제9조 1항, 2항 및 제26조 1항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등에 본 사업이 해당되어, 제세공과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본 사업중 시티타워 건립의 경우 지방세법 제9조 1항 및 2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시티타워 건설비용 이외에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이에 사업자가 시티타워와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o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취득세 등 납부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p. 14	▷ 제5조(사업기간 등) **1) 최초 대부기간의 축소 및 협의연장횟수 증가로 사업의 안정성이 축소된바 14.02월 공모안대로 변경이 가능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4.02월 공모안: 준공일로부터 30년, 1회 20년 연장** **→ 현재 공모안: 착공일로부터 20년, 3회 10년 단위 연장)** **2) 14.02월 공모안에 의거하면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기간이 약 1년 소요되는 바, 15년 12월 착공시한 준수시 발주도서간 면적 및 평면등의 차이와 입찰시 개선계획에 따른 인허가 변경기간, 실시설계기간, 착공신고 승인 기간을 고려시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착공시한 변경가능한지 여부 및 착공시한 변경시 사업계획서 평가상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대부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o 공모지침서 제5조 제4항의 '2015년 12월 31일 이내 착공' 목표는 사업자가 최대한 신속히 본 사업을 진행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평가방법 등은 비공개입니다.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p. 14	▷ 제6조(관련 계획 및 법령) ①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 및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관계 법령의 개정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등 사업자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련 인허가 수행업체에 대한 설계 변경비용의 부담 주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 시 관련 인허가 수행업체의 계약조건 및 업무범위)**	o 경제청은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시티타워 건설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 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p. 18	▷ 제12조(임대방식) 4항 **대부기간 최소 20년에서 최대 50년이후, 최소 준공상태 혹은 원상으로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시티타워를 최초 준공상태 또는 원상반환 요구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o 준공 상태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대부기간 20년에서 50년 이후 최초 준공상태의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제12조 제4항 단서로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최초 준공상태 또는 원상으로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또는 그에 대한 경제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원상회복의 방법은 위 승인 과정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p. 20	▷ 제16조 ③ 제1항의 시티타워 건설비는 물가상승률 등이 모두 고려된 고정확정 비용이며, 어떠한 사유로도 사업자는 해당 건설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협약 체결 시 경제청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반영하기로 한다. **상위관계 법령의 개정, 청라국제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시티타워 건설비가 초과 한 경우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설계변경 대상 등에 따른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시티타워 건설비용 이외에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이에 사업자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제청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p. 20~21	▷ 제16~17조(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의 건설, 복합용지 기반시설의 건설) **시티타워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 內 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시티타워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지급자재 금액 포함입니다.
p. 21	▷ 제17조 1항 **기반시설 조성비용 139억의 산출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책정된 금액 범위를 초과 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설계변경 대상 등에 따른 금액 지급이 요청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LH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 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고정 불변이며, 동 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기반시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p. 29, 37	▷ 제33조(감점 등) ②사업신청자가 ~ 사업 계획서 및 별도 제출물 등에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표기를 하였을 경우 제6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득점(400점 만점 기준)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제1조(적용원칙) ② 제2조 제1호 사업계획서 Part1과 제4조의 도판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있는 채색이나 기타 어떤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사업계획서의 구성) 1. Part1 : 기업현황, 사업신청서, 신청자 현황, 재무제표 **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Part1 기업현황의 각종 양식에 사업신청자가 표기되어, 제33조 감점기준 및 제1조 적용원칙에 위배됩니다. 감점기준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조정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별첨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위반일 경우 감점기준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Part1 기업현황의 각종 양식에 사업신청자 표시부분에는 표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외 사업계획서 등의 부분에 채색이나 기타 어떤 표기를 하는 등으로 사업신청자를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작성되어서는 안됩니다. o 감점은 공모지침서 제33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p. 30	▷ 제36조(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선정심의회 당일 사업계획서 설명을 위한 사업신청자의 별도 PT는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평가과정(별도 PT 포함) 등은 비공개입니다.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p. 38~40	▷ 제2조(사업계획서의 구성) 4. 부속서류 : 제5조에 따른 증빙서류 등 **부속서류에 담아야 할 내용이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의** **① 기업현황 관련 자료 작성 방법** **② 시타타워 관련 자료 작성 방법** **③ 복합시설 관리운영 관련 자료 작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지요?**	o 모두 포함합니다.
p. 38	▷ 제3조(사업계획서의 규격 등) **1) A3용지의 단면가능 및 백지의 쪽수 산정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주텍스트 크기는 제목과 소제목 등의 위계를 고려하여 "12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내"로 조정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인쇄가 안된 뒷면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o 주텍스트는 12포인트의 크기로 작성합니다.
p. 39	▷ 제4조(별도 제출물) **표지, 본문, 간지의 지질과 표지, 세네카 양식, 한글 스타일 및 줄 간격 등은 사업신청자가 임의 작성하여 제출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설계업체의 참여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신청자가 임의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o 공모지침서에서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그밖의 법령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p. 41	▷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3. 시티타워 기본설계 준수 여부 및 개선계획은 시티타워의 기본설계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시티타워를 시공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관련 사항을 소개하여야 하고, 시티타워 기본설계에서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작성 **시티타워 기본설계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한 각 공종별(건축/구조/기계 등) 도면의 별도 제출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신청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p. 41	7. 주차장 계획은 <별첨5>에 제시된 진입도로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공모지침서에는 <별첨5>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정사항(별첨5⇒별첨4)을 2015년 2월 16일 경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기타	**기본설계를 수행한 설계업체의 참여 가능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공모지침서에서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그밖의 법령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